

1. 개정이유

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, 근거조항의 오류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현행화 및 오류정정(안 별표 3, 별지 11호)

- 1)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분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행위를 명확화하는 하위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- 2)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 오류를 정정하고, 별지 11호 양식의 장비실 및 측정장비 명칭 등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비규제

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4조”를 “제1항제6조”로 하고, 같은 목 처분기준 1차란 중 “영업정지 1개월”을 “등록취소”로 하며, 같은 목 처분기준 2차란 중 “등록취소”를 삭제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”로 하고, 같은 목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5호”를 “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바목 근거 법조문 중 “제1항제6호”를 “제1항제5호”로 한다.
서식 1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의 제1호 시설명란 중 “충전실”을 “장비실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충전설비 및 측정장비”를 “측정장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